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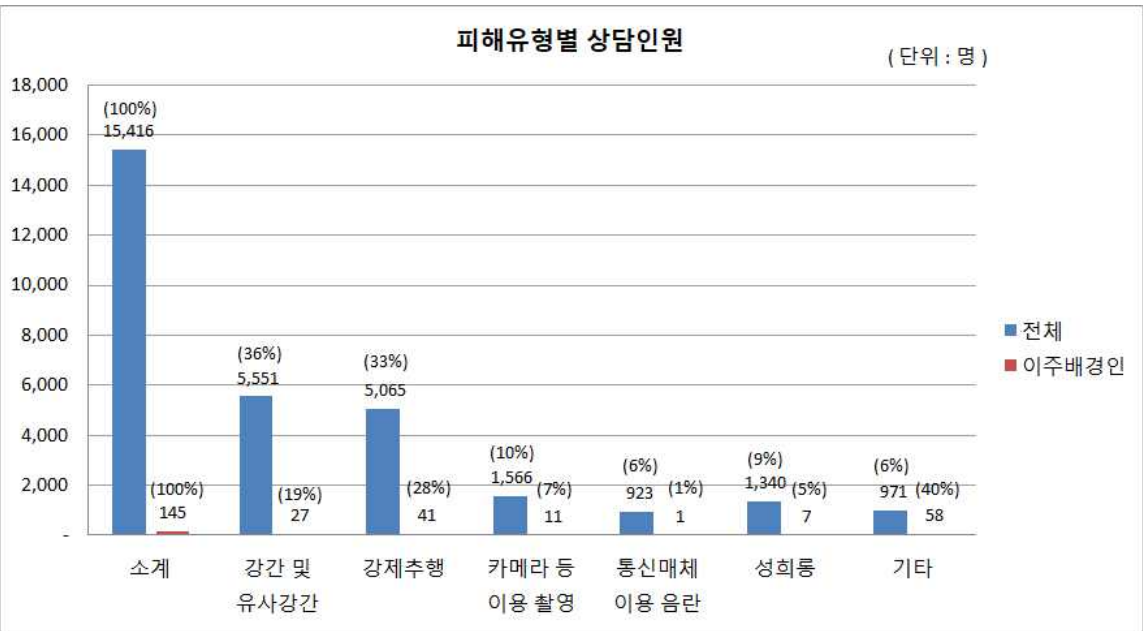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22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황 세부내용

1. 성폭력 피해 유형 및 지원건수

전성협에서 지원한 성폭력 피해자는 15,416명(158,298건)이며 그 중 가장 많은 피해유형은 강간이었다.

피해 유형별 지원 건수 (단위: 건)							
구분	계	강간 및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희롱	기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등)
전체	158,298	70,370	53,604	14,426	8,364	7,222	4,312
장애인	36,819	21,991	10,673	1,132	1,787	574	662



피해유형별 피해자수 및 지원건수를 보면 강간 및 유사강간 5,551명(70,370건), 강제추행 5,065명(53,604건), 카메라등이용촬영 1,566명(14,426건) 통신매체이용음란 923명(8,364건), 성희롱 1,340명(7,222건), 기타 971명(4,312건)으로 피해자의 78%(123,974건)가 강간과 강제추행 피해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통신매체이용음란도 14%(22,790건)를 차지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도 상당부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성협 통계 상 피해유형은 국가기관 통계¹⁾와 달리 강제추행보다 강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 이런 차이는 아래 3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강간죄 처벌의 불확실성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 하는 피해자가 많기 때문이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 ‘최협의설’을 따르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지, 처벌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먼저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성협에서는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강간이 다수임에도 신고조차 못 하거나,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파악하여 강간죄 개정운동을 펼치고 있다.

둘째, 성폭력을 신고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성폭력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사실을 폭로할 경우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학교가 손상될까봐 두려워하여 신고를 꺼리게 된다. 또한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도 신고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셋째, 가해자들의 보복성 역고소 남발은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는 데 걸림돌이

1) 여성가족부 성폭력안전실태조사(2019년) : 강간 0.1%, 성추행 9.3%
경찰청 범죄통계(2021년) : 강간 6,077건, 강제추행 13,962건
법무부 성범죄백서(2008~2018년) : 강간 22,849건, 강제추행 33,020건
2) 해바라기센터 통계에서도 국가기관 통계와 달리 강간(7,136명 (41.5%))이 강제추행(6,321명 (36.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해바라기센터 연감)

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으로 역고소하며 피해자를 피의자 위치에 서게 만들고 있다. 역고소는 가해자들의 대응전략 중 하나로 알려지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의 84.1%는 불기소되는 데다 기소된 피의자 수는 성폭력을 저지른 피의자의 0.78%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³⁾

2.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피해자 지원내역을 보면 심리정서지원 50%(79,314건), 수사법적지원 18%(29,154건), 의료지원 7%(11,719건), 기관연계 5%(7,478건), 정보제공13%(20,118건) 기타 7%(10,515건)로 나타났다.

성폭력피해자지원내용 (단위: 건)							
구분	계	심리정서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지원	기관연계	정보제공	기타
전체	158,298	79,314	29,154	11,719	7,478	20,118	10,515
장애인	36,819	20,807	6,200	1,391	1,938	3,921	2,562

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의 치유회복과 권리확보를 위한 심리정서지원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간 진행되는 수사·재판과정에서 법률상담, 신뢰관계인 동석, 재판모니터링, 변호사와 협업체계를 통한 법률지원, 의견서·탄원서·상담확인서 제출 등 피해자의 사법적 대응과정을 조력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로 일상회복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양성정책평등포럼(2019.7), 대검찰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더불어 피해자 상황에 맞는 정보제공, 의료지원,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등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중심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대상자·기관의 유형

성폭력 피해상담소가 상담하는 상담대상자 및 기관을 보면 158,298건 중 87,959건이 본인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56%는 본인이 직접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족·친인척 11%(16,855건), 동료이웃 1%(1,955건),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 4%(7,064건), 수사사법기관 9%(13,965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9%(15,089건), 유관기관(사회복지시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4%(6,039건), 기타 6%(9,372건)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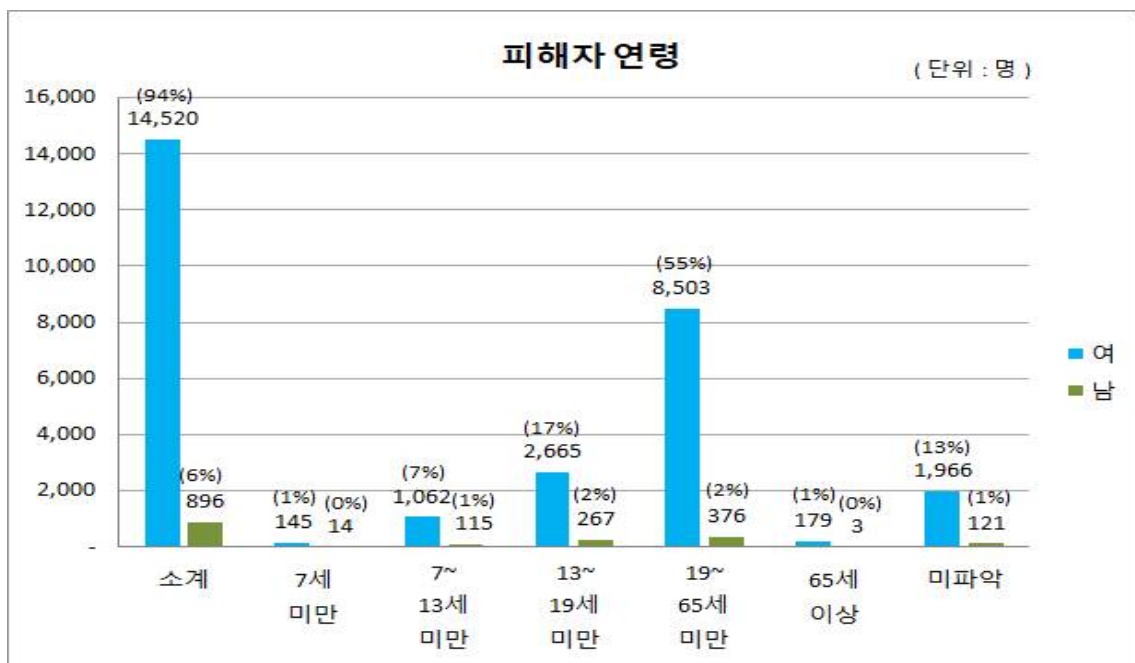
성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한 대상자·기관 (단위: 건)									
구분	계	본인	가족 친인척	동료 이웃 지인	교육 기관 및 행정 기관	수사 사법 기관 (경찰, 검찰, 법원 등)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해바 라기, 상담소, 1366)	유관 기관 (사회 복지 시설, 범피 센터 등)	기타
전 체	158,298	87,959	16,855	1,955	7,064	13,965	15,089	6,039	9,372
장 애 인	36,819	16,960	3,982	423	1,739	4,529	4,886	2,981	1,319

성폭력 피해로 가족이 상담소를 찾는 경우가 전체 건수의 11%였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교육기관과 수사사법기관이 상담소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전체건수의 13%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지역 자원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등의 이유로 연계하고 협업하며 피해자 지원을 논의하는 경우도 9%를 차지한다. 이는 수사기관·교육기관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피해자 통합지원을 돕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성폭력 피해자 연령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을 보면 15,416명 중 7세미만 1%(159명), 7세~13세 미만 8%(1,177명), 13세~19세미만 19%(2,932명), 19세~65세미만은 57%(8,879명), 65세이상 1%(182명), 미파악 14%(2,087명)로 나타났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28%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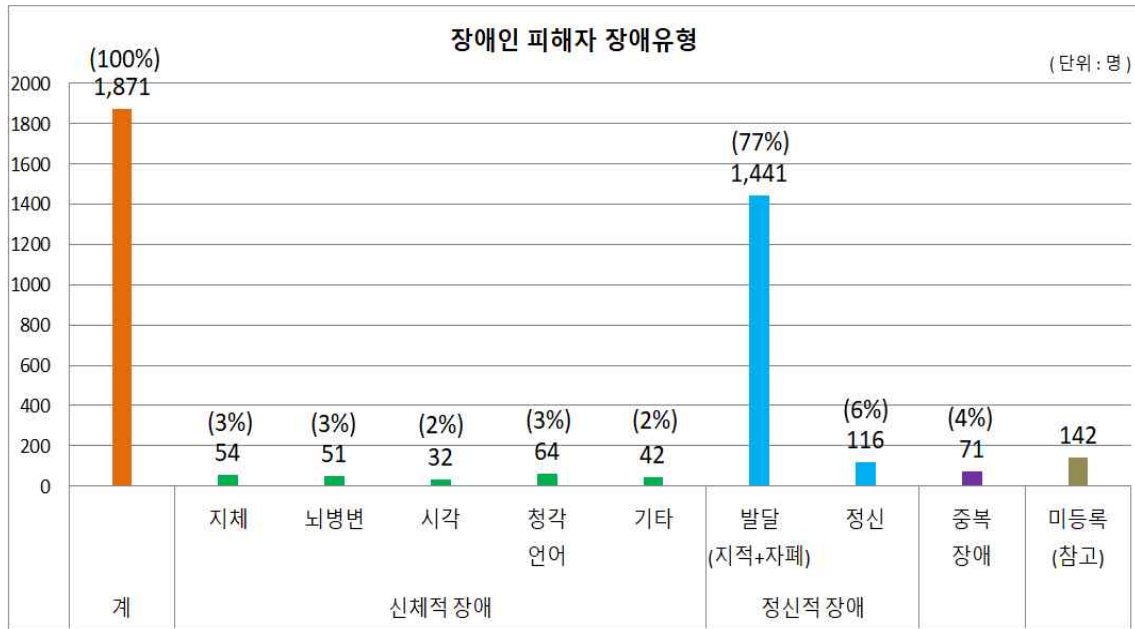


전체 피해자인원 15,416명 중 피해자의 94%(14,520명)가 여성임을 알 수 있고, 남성이 6%(896명)임을 알 수 있다. 여성 피해자 14,520명 중 장애인 피해자는 12%(1,728명)를 차지하며, 남성 피해자 896명 중 장애인 피해자는 16%(143명)를 차지한다.

5. 장애인 피해자의 장애유형

성폭력상담소가 지원하는 장애인은 1,871명으로 전체피해자 인원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피해자가 77%(1,441명)를 차지하며, 정신장애 6%(116명), 지체장애 3%(54명), 뇌병변 3%(51명), 시각장애 2%(32명), 청각장애 3%(64명), 기타(내부장기장애) 2%(42명), 중복장애 4%(71명),

미등록피해자 142명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의 피해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이 취약한 대상에 대한 성폭력 피해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성폭력 가해자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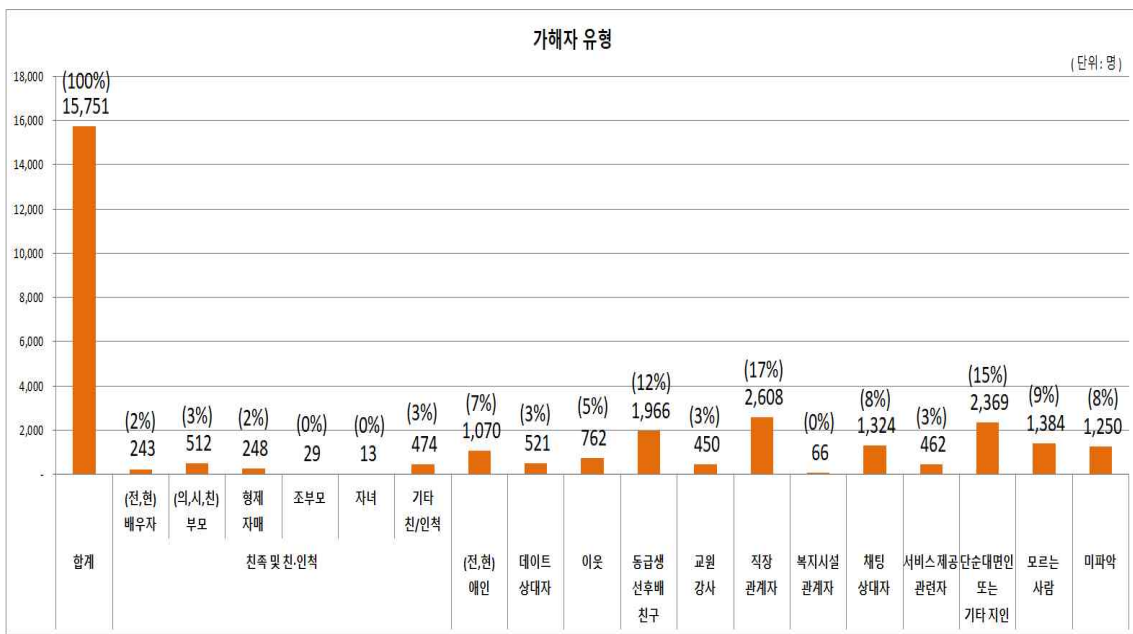
성폭력 가해자의 유형을 보면 전체 가해자 15,751명 중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전체 가해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친족 및 친인척이 10%(1,519명), (전·현)애인은 7%(1,070명), 데이트 상대자 3%(521명), 이웃 5%(762명), 동급생·선후배·친구 12%(1,966명), 교원·강사 3%(450명), 직장관계자 17%(2,608명), 복지시설관계자 0%(66명), 채팅상대자 8%(1,324명), 서비스제공관련자 3%(462명), 단순대면인 또는 지인 15%(2,369명), 모르는 사람 9%(1,384명), 미파악 8%(1,25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밀한 관계(데이트상대자·애인)가 가해자인 경우도 전체 피해자의 10%, 일상에서 가장 흔히 만나는 이웃, 동급생·선후배·친구, 교원·강사, 복지시설관계자, 직장관계자, 서비스제공관련자가 가해자인 비율이 40%로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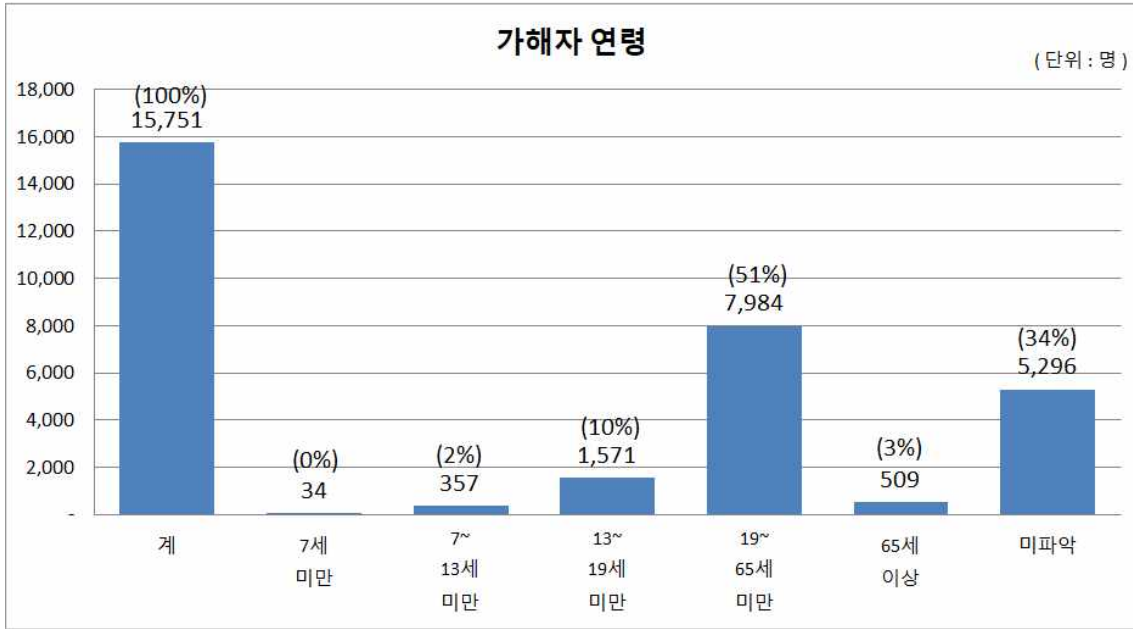
즉 성폭력 가해자는 친족, 이웃, 직장관계자, 교원·강사, 동급생 선후배 등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전체 가해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인 중에서도 친밀한 관계이며 사회적 관계망을 비롯하여 생존권, 직업권, 학업권 등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상으로 피해자는 자기보호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위치여서 그 위협성이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7.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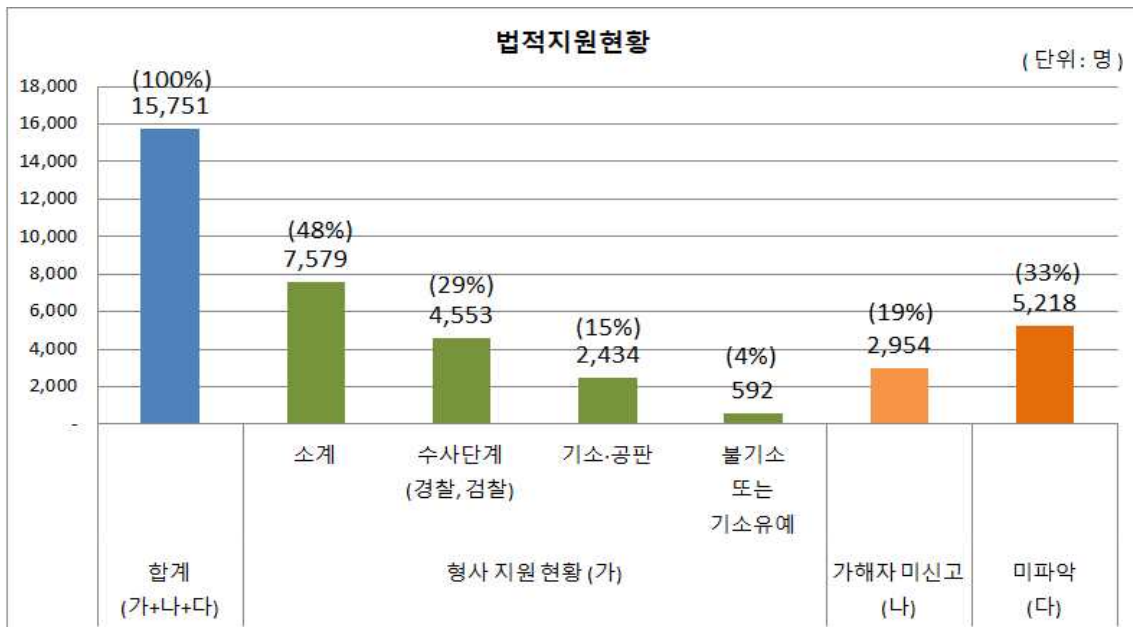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을 보면 7세미만 0%(34명), 7~13세미만 2%(357명), 13세~19세미만 10%(1,571명), 19세~65세미만 51%(7,984명), 65세이상 3%(509명), 미파악 34%(5,296명)로 나타났다. 전국성폭력상담소가 지원하는 피해자의 가해자는 54%가 성인이며 12%가 미성년자로 집계되었다.

<그림 배치를 위한 공란>



8. 법적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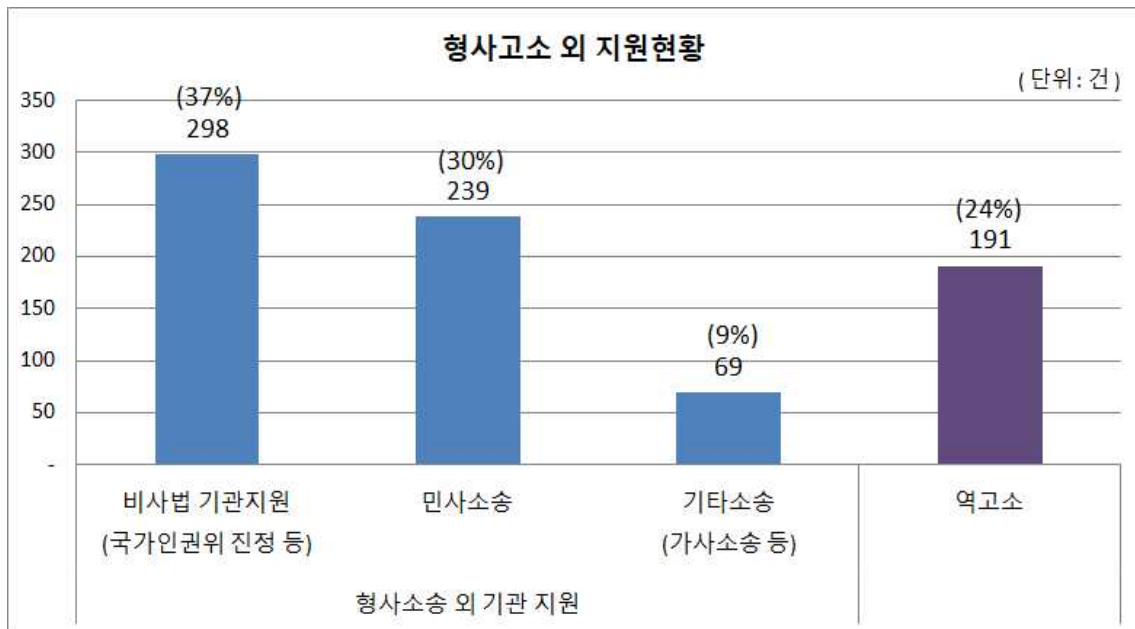
형사지원현황을 보면 15,751명 중 형사고소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해자의 수는 7,579명으로 48%를 차지하였다. 가해자를 미신고한 경우는 2,954명으로 19%로 나타났다.



가해자를 미신고한 이유로는 앞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친족 및 친밀한 관계와 생활 터전인 조직 내 가해자가 많아 법적대처 시 생존의 문제, 가해자에 대한 양가감정, 가족과 조직 분란에 대한 피해자 책임론 등에 대한 부담감, 공소시효 및 최협의 강간죄규정 등으로 보고되었다. 여전히 성인지적이지 못한 법과 제도 및 사회의 2차 피해로 인한 두려움(가족해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낙인, 공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9. 형사고소 외 지원현황⁴⁾

성폭력상담소에서는 피해자의 형사고소 외에도 비사법기관지원(국가인권위진정 등) 298명, 무고, 명예훼손 등 역고소는 191명, 민사소송 239명 성폭력과 관련된 기타소송(가사소송 등) 69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타소송은 친족피해자의 부모이혼, 피해자의 개명 등 최소한 자기보호를 위한 소송으로 집계되었다.



4) 피해자 한 명에게 여러 건의 역고소 지원이 있는 경우에도 1명으로 집계하였으며, 피해자의 역 민사소송(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경우)은 포함하지 않았다.